



제337회 임시회  
2015. 1. 28.(수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2.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# 2.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1월 19일
- 회부일자 : 2015년 1월 20일

### 3. 제정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재정보전금 명칭변경 및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.

### 4. 주요내용

- 제명변경
  -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→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
- 명칭변경(제1조 ~ 제12조)
  - 재정보전금 → 조정교부금
  - 일반재정보전금 → 일반조정교부금
  - 시책추진보전금 → 특별조정교부금
- 일반재정보전금의 산정·배분방법 변경(제6조)
  - 시·군의 도세징수 실적에 따른 배분을 100분의 40 → 100분의 30
  - 재정력지수 기준 배분을 100분의 10 → 100분의 20
-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장·군수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(제6조제2항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변경함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 및 명칭변경, 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임.
-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 및 제36조에 의거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의 명칭을 조정교부금으로 통일함에 따라
  - “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” 를 “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” 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
  - “재정보전금” 을 “조정교부금” 으로, “일반재정보전금” 을 “일반조정교부금” 으로, “시책추진보전금” 을 “특별조정교부금” 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음.
- 조례안 제6조에서는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·배분 방법을 「지방재정법」 시행령 제36조의 개정 내용을 적용하여,
  -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종전대로 시·군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,
  -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·군 도세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던 것을 100분의 30으로,
  -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던 것을 100분의 20으로 각각 변경하였음.

※ 일반조정교부금 배분율 변경

| 구 분                 | 개정 전     | 개정 후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시·군 인구수에 따른 배분율     | 100분의 50 | 변경 없음    |
| 시·군 도세징수 실적에 따른 배분율 | 100분의 40 | 100분의 30 |
| 재정력지수 기준 배분율        | 100분의 10 | 100분의 20 |

- 이는 시·군의 도세 징수실적 비율에 따른 배분율을 줄이고, 재정력지수 기준 배분율을 확대함으로써 시·군의 재정형평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도 부합되는 것으로 보여짐.
- 또한, 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는 ‘시장·군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다’는 조항을 신설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의 민간보조사업 집행을 제한하였는데 법리적, 내용적 측면에서 문제는 없음.
- 그 밖에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의 다음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였음.
  - ‘규정된’ → ‘따라’ (안 제1조)
  - ‘시·군 상호간의’ → ‘시·군 간의’ (안 제1조)
  - ‘정의는’ → ‘뜻은’ (안 제2조)
  - ‘당해’ → ‘해당’ (안 제2조제1항, 제6조제1항, 제7조제1항, 제8조제1항, 제8조제2항, 제9조제1항, 제9조제2항)
  - ‘규정하는’ → ‘따른’ (안 제2조제3항)
  - ‘각호’ → ‘각 호’ (안 제2조제3항, 제3조, 제6조제2항, 3항, 제11조제3호)
  - ‘2개 시·군 이상이’ → ‘둘 이상의 시·군이’ (안 제6조제1항1호)
  - ‘규정에 의한’ → ‘따른’ (안 제2조제1항, 제6조제4항, 5항)
  - ‘사유로 인하여’ → ‘사유로’ (안 제7조제1항)
  - ‘통지하여야’ → ‘알려야’ (안 제7조제2항)
  - ‘규정에 의하여’ → ‘따라’ (안 제7조제3항, 제9조제2항, 제10조)
  - ‘2이상의’ → ‘둘 이상의’ (안 제11조제1호, 제10조)
  - ‘1시·군이 2이상의 시·군으로’ → ‘하나의 시·군이 둘 이상의 시·군으로’ (안 제11조제2호)

## ※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주요변경 내용

▶ 조정교부금의 재원 : (① + ②) × 27%(청주시는 47%)

① 시·군에서 징수하는 도세(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)의 총액

② 도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도의 인구로 나는 금액에 전년도 말의 해당 시·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

▶ 조정교부금의 종류

① 일반조정교부금 :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

② 특별조정교부금 :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

▶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율

· 시·군 인구수에 따른 배분율 : 100분의 50

· 시·군 도세징수 실적에 따른 배분율 : 100분의 30 (개정전, 40)

· 재정력지수 기준 배분율 : 100분의 20 (개정전, 10)

## ※ 재정력 지수

▶ 재정 수요에 대한 자치단체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,

지방교부세법의 기준재정수입액 ÷ 지방교부세법의 기준재정수요액

☞ 재정력 지수가 1을 초과하면 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재정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임. 반면 재정력 지수가 1 이하면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재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임.

※ 우리도 재정력지수

| 연도별<br>단체별 | 2010년 | 2011년 | 2012년 | 2013년 | 2014년 |
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도본청        | 0.51  | 0.49  | 0.444 | 0.378 | 0.438 |
| 청주시        | 0.662 | 0.685 | 0.646 | 0.592 | 0.611 |
| 충주시        | 0.306 | 0.296 | 0.242 | 0.246 | 0.269 |
| 제천시        | 0.247 | 0.232 | 0.223 | 0.183 | 0.232 |
| 청원군        | 0.422 | 0.455 | 0.439 | 0.375 | 0.355 |
| 보은군        | 0.159 | 0.162 | 0.153 | 0.085 | 0.107 |
| 옥천군        | 0.188 | 0.186 | 0.173 | 0.108 | 0.132 |
| 영동군        | 0.155 | 0.154 | 0.142 | 0.129 | 0.122 |
| 증평군        | 0.268 | 0.282 | 0.259 | 0.185 | 0.227 |
| 진천군        | 0.371 | 0.358 | 0.346 | 0.349 | 0.381 |
| 괴산군        | 0.151 | 0.16  | 0.173 | 0.084 | 0.100 |
| 음성군        | 0.427 | 0.391 | 0.384 | 0.328 | 0.325 |
| 단양군        | 0.146 | 0.157 | 0.151 | 0.097 | 0.119 |

※ 2010 ~ 2012년 재정고 발취, 2013 ~ 2014년은 보통교부세 산정책자에 의해 산출